##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37 발의연월일: 2025. 3. 14.

발 의 자:이수진·송재봉·김준혁

송옥주·김문수·박홍근

민병덕·백혜련·서미화

이원택 · 한정애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그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인건비 등의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너무 경직된 용도로만 규정되어 있어 여성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으며, 각 정당에서는 해당 경상보조금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인건비에 치중하는 사례가 많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교통비 등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용도를 확장함으로써, 여성정치발전의 실질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4호 등).

법률 제 호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인건비"를 "인건비, 교통비"로 한다.

4. 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관련 경비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	2
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	
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	
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	
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	
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	4. 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당원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관련 경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	6

인건비, 교통비
③ • ④ (현행과 같음)